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2231

제출연월일: 2024. 7. 25.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그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1항 중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을 "제4 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 ② 제473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7조(미수범 등) ① <u>제470조</u>	제477조(미수범 등) ① <u>제470조</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제1항</u>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	
다.	.
<u><신 설></u>	② 제473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u><신 설></u>	③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	④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
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	지의
하여 처벌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77조 제2항 (미수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의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
2	안 제477조 제3항 (미수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7조 제2항 (미수범)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77조 제3항 (미수범)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477조제2항(미수범)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때 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의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은 그 처벌 근 거만 규정하여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제477조제3항(미수범)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때 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동혁	남호성	여중협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동혁	044-205-3318	kimdh1235@korea.kr